

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”로 한다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13인”을 “13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b>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</b>	<b>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</b>
<b>례</b>	<b>조례</b>
제3조(농업지도자 육성사업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는 농업지도자를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 1. 2. (생략) 3. <u>기타</u> 농업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	제3조(농업지도자 육성사업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,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,
제7조(음자심사회의) ① (생략)  ② 회의의 구성은 위원장 <u>1인</u> 을 포함하여 <u>13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센터의 소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 1. (생략) <b>2. 센터 기술담당관</b> 3.~5. (생략) ③~⑤ (생략)	제7조(음자심사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b>1명</b> ----- ----- <b>13명</b> ----- ----- ----- ---, 1. (현행과 같음) <b>&lt;삭 제&gt;</b> 3.~5. (현행과 같음) ③~⑤ (현행과 같음)